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2 선고 2021나932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2 선고 2021나93274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1. 10. 7 선고 2020가단54842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

피고, 피항소인 A

변론종결 2022. 11. 10.

판결선고 2023. 2. 2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10. 7. 선고 2020가단548424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9. 4. 5. 4,000,000원, 2019. 5. 15. 45,000,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(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행 사이의 “바.”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바. 피고는 2019. 4. 27. H와 사이에, 피고가 H로부터 과천시 I 2층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을 보증금 5,000만 원, 월세 95만 원, 임대차기간 2019. 5. 15.부터 2021. 5. 15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』

○ 제1심 판결 제3면 제4, 5행의 “갑 제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”를 “갑 제1 내지 11,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”로 고쳐 쓴다.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,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중 2019. 4. 5. 400만 원 및 2019. 5. 15. 4,5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으며, 위 각 증여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,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합계 4,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.

3. 판단 - B과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의 존부

먼저 B과 피고 사이에 2019. 4. 5. 400만 원 및 2019. 5. 15. 4,5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주식회사 D(이하 'D은행'이라 한다)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피고와 B은 2019. 5. 15.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간 사실, E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2019. 4. 5. 4,400만 원, 2019. 5. 15. 9,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사실, 피고는 2019. 4. 8. 위 4,400만 원 중 4,000만 원을 B에게 송금한 사실, 피고는 2019. 5. 15. 위 9,000만 원 중 4,500만 원을 B에게, 나머지 4,500만 원을 H의 처인 J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① 피고와 B은 부부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는데,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4억 4,000만 원 중 3억 5,200만 원은 B이 D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나머지 8,8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, ②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합계 4,900만 원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, 피고가 위 돈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2019. 4. 5. 400만 원 및 2019. 5. 15. 4,5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준규, 판사 신미진, 판사 박미영